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

검 토 보 고

〈부패범죄 및 범죄피해재산 적용범위 확대〉

- 한창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976호)
- 박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050호)
- 박은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089호)
- 김용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313호)
- 이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510호)
- 천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441호)

2026. 4.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혜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III . 검토의견	8
1. 개정안의 주요내용	8
2. 검토의견	15
※ 참고자료	
1. 대부업법 제19조	19
2. 채권추심법 제15조	24
3.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 [별표]	26
4.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제23조	28

I. 제안경위

【한창민의원안】

1. 발 의 자 : 한창민의원 등 13인
2. 발 의 일 : 2025. 6. 20.
3. 회 부 일 : 2025. 6. 23.

【박정훈의원안】

1. 발 의 자 : 박정훈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6. 24.
3. 회 부 일 : 2025. 6. 25.

【박은정의원안】

1. 발 의 자 : 박은정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 2025. 11. 11.
3. 회 부 일 : 2025. 11. 12.

【김용민의원안】

1. 발 의 자 : 김용민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11. 17.
3. 회 부 일 : 2025. 11. 18.

【이인영의원안】

1. 발 의 자 : 이인영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11. 24.
3. 회 부 일 : 2025. 11. 25.

【천준호의원안】

1. 발 의 자 : 천준호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3. 12.
3. 회 부 일 : 2026. 3.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창민의원안】

전세사기 피해자는 30,400명,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총액은 약 4조 428억 원에 달하고 있음(2023. 6. 1. ~ 2025. 5. 31, 국토부).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전세 사기 범죄 피해재산은 몰수·추징할 수 없어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환부 받을 수가 없고, 직접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한 사기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또한 초과이자를 수령하는 등 불법추심을 일삼는 사금융업자의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몰수·추징이 가능하지만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조항이 없음. 실제로 검찰은 2024년 한해에 666억원을 보전 결정하였으나, 이 금액을 국가가 모두 확보하여도 현행법 제2조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가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 제2조 및 별표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를 각 추가하여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의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박정훈의원안】

현행법은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뇌물, 도박 등 특정 경제범죄로 부
정하게 얻은 부패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초과이자를 갈취당하는 고금리 불법대부업 범죄는 현행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가가 압수한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이
아닌 범죄자들에게 돌려주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이 불법대부업자들의 범죄수익
약 22억 원을 압수했으나 대부업법 위반이 현행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중 10억
원 이상을 범죄자들에게 돌려주었음.

이에 고금리 불법대부업 범죄로 취득한 수익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몰수·추징 대상에 포함시켜, 범죄수익이
범죄자들에게 돌아가는 사태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
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별표 제30호 신
설).

【박은정의원안】

최근 불법사금융범죄가 심각한 상황임. 불법사금융범죄(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만에 2.58배가 증가했음. 대부업법 위반이 2021년 675건에서 2022년 914건, 2023년 977건, 2024년 1,580건으로 크게 늘었고,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발생 건수 또한 2021년 382건에서 2022년 558건, 2023년 772건, 2024년 1,155건으로 증가해 지난 3년간 약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음.

검찰은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서 자산동결(보전결정)한 금액은 2020년 9억 871만원에서 2024년 666억 1,574만원으로 4년 만에 약 70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음. 같은 기간 보전 결정도 18건에서 238건으로 13배 이상 늘었음. 보전 결정은 수사 초기 피의자의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법원 승인 아래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로 이후 형사재판에서 범죄 혐의가 확정되면 국고로 귀속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환부’가 이뤄지는데, 현행 부패재산몰수특례법상 대부업법 위반 피해자에게 자산을 돌려주는 환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수백억원대 불법 자산을 확보했음에도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검찰이 2024년 동결한 666억 1,574만원 가운데 피해자에게 돌아간 금액은 0원인 이유임.

이에 부패범죄 대상에 대부업법 위반 및 채권추심법 위반을 포함시켜 불법사금융 범죄로 몰수·추징한 범죄수익을 국가가 직접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별표 제30호 및 제31호 신설).

【김용민의원안】

최근 불법사금융업체의 불법 고리이자 수수, 스토킹 등 불법행위가 수반된 채권추심행위를 비롯하여 불법사금융 범죄가 심각한 상황임.

불법사금융의 피해자 상당수는 서민, 사회취약계층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자력 구제가 쉽지 않고, 불법사금융범죄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상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에서 범죄수익을 환수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수 없어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음.

이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일정한 불법사금융범죄를 추가하여 해당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국가가 몰수·추징한 다음 직접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3호다목 신설 등).

【이인영의원안】

현행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 범죄를 부패범죄에 포함하지 아니함.

이로 인해 대부업법 제8조 및 제11조를 위반하여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여 이자를 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들은 해당 법률을 근거로 하여서는 범죄수익을 환수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대부업법 제19조제2항제3호의 죄를 추가하여 과도한 이자율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들이 환수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0호 신설).

【천준호의원안】

현행법은 특정 경제범죄로 부정하게 얻은 부패재산을 몰수 및 추징하고, 그중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불법사금융 범죄와 불법 대부중개를 통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부패범죄 및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불법사금융 범죄는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층을 대상으로 원금 이상의 고리를 약탈하고 이를 빌미로 불법 추심을 일삼는 등, 한 사람의 인격과 일생을 파괴하는 수준의 악질적 범죄로, 그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줌으로서 피해를 회복하게 할 필요가 큼

이에 ‘부패재산’ 및 ‘범죄피해재산’ 대상 범죄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를 추가하여 불법사금융 근절 및 범죄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등).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6건의 개정안은 몰수·추징·환수 등의 특례를 적용하는 부패범죄와 피해자환부 대상인 범죄피해재산의 적용범죄를 확대하는 것으로,

○ **한창민의원안**은 범죄피해재산 적용범죄 중 ① 특정사기범죄의 유형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한 경우’를 추가하고(안 제2조제3호가목), ② 부패범죄와 범죄 피해재산의 적용범죄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¹⁾를 각각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다목 및 별표 30호).

1) <대부업법 위반범죄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대부업법 제19조의 죄 ([참고자료 1]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무등록 대부업), 제2호(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제3호(대부업, 대부중개업 광고)
	제2항	제1호(대부업 등록증 양도 등), 제2호(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수나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수), 제3호(정부기관 등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 제4호(개인정보의 용도 외 목적 처리), 제5호(개인정보 불법 제공)
	제3항	대부업자와 대주주간 신용공여 한도 위반 등
	제4항	제1호(대부업 아닌 자의 상호 사용), 제2호(대부계약 체결을 위한 서류의 용도 외 사용), 제4호(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한 행위 등), 제5호(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채권 양도), 제6호(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대부중개 등), 제7호(대부업자 중개수수료 상한 위반), 제8호(중개수수료 상한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제9호(중개수수료 초과수취 금지), 제10호(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 **박정훈의원안**은 부패범죄에 대부업법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를 추가하고(안 별표 30호), **박은정의원안**은 부패범죄에 ① 대부업법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와, ②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제15조²⁾의 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30호 및 31호).
- **김용민의원안**은 부패범죄와 범죄피해재산의 적용범죄에 대부업법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를 각각 추가하고(안 제2조제3호다목 및 별표 30호), **이인영의원안**은 부패범죄에 대부업법 제19조제2항제3호의 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30호).
- **천준호의원안**은 범죄피해재산의 적용범죄에 대부업법 제19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죄를 추가하고(안 제2조제3호다목), 부패범죄에 대부업법 제19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6호·제9호의 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30호).

2) <채권추심법 위반범죄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채권추심법 제15조의 죄 ([참고자료 2] 채권추심법 제15조)	제1항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한 채권추심행위
	제2항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경우 등
	제3항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것 외에 채무 관련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연락한 경우 및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경우

【한창민의원안】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범죄피해재산”이란 별표에 규정된 죄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3. ----- ----- ----- ----- -----.
가.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형법」 제114조에 따른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欺罔)하여 범행한 경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특정사기범죄”라 한다)로 한	가. ----- ----- ----- ----- ----- ----- ----- ----- ----- <u>유사수신행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한 경우,</u> ----- ----- ----- ----- -----

현행	개정안
정한다]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특정사기범죄로 한정한다)	----- ----- ----- ----- ----- -----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u><신설></u>	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죄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별표]	[별표]
1. ~ 29. (생략)	1. ~ 29. (현행과 같음)
<u><신설></u>	3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

【박정훈의원안】

현행	개정안
[별표]	[별표]
1. ~ 29. (생략)	1. ~ 29. (현행과 같음)
<u><신설></u>	3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

【박은정의원안】

현행	개정안
[별표] 1. ~ 29. (생략) <u><신설></u> <u><신설></u>	[별표] 1. ~ 29. (현행과 같음) 3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 3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죄

【김용민의원안】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범죄피해재산”이란 별표에 규정된 죄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가. 나. (생략) <u><신설></u> 4. 5. (생략)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 ----- ----- ----- -----.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 4. 5.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별표] 1. ~ 29. (생략) <u><신설></u>	[별표] 1. ~ 29. (현행과 같음) 3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

【이인영의원안】

현행	개정안
[별표] 1. ~ 29. (생략) <u><신설></u>	[별표] 1. ~ 29. (현행과 같음) 3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3호

【천준호의원안】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범죄피해재산”이란 별표에 규정된 죄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 ----- ----- ----- -----

현행	개정안
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가.·나. (생략) <신설> 4.·5. (생략) [별표] 1. ~ 29. (생략) <신설>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죄 4.·5. (현행과 같음) [별표] 1. ~ 29. (현행과 같음) 3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6호·제9호의 죄

2. 검토의견

□ 현행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부패재산 몰수법”)은 몰수·추징·환수 등의 특례를 적용하는 ‘부패범죄’를 별표에 열거하고, 몰수대상인 부패재산을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정의하고 있음³⁾.

○ 부패재산 등이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되었더라도 상속·증여 등으로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이전된 경우에는 몰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몰수·추징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음⁴⁾.

○ 특히, 특정사기범죄, 횡령, 배임 등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등을 ‘범죄피해재산’⁵⁾으로 규정하면서, 범죄피해

3)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패범죄”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2. “부패재산”이란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한다.

가. “범죄수익”이란 부패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을 말한다.

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범죄수익의 과실(果實)로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 별표는 참고자료3 참조)

4) 부패재산몰수법 제3조(부패재산의 몰수) ① 부패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부패재산을 몰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몰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하는 부패재산이 부패재산 외의 재산과 합하여진 경우에는 부패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이하 “혼합재산”이라 한다) 중 부패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제4조(몰수의 요건 등) ① 제3조에 따른 몰수는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범인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情)을 알면서 그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의 취득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는 그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②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무상(無償) 또는 현저한 저가(低價)로 귀속된 경우에는 범인 외의 자가 그 정을 알지 못하고 그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취득한 때에도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자가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여 이를 범죄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하는 특례⁶⁾를 두고 있음.

□ 개정안은 전세사기, 대부업법 위반범죄, 채권추심법 위반범죄 등의 경우에도 이 법의 몰수·추징·환부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어 관련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으로,

○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려는 이 법⁷⁾ 및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UNCAC」⁸⁾의 취지,⁹⁾ 범죄행위

5)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범죄피해재산”이란 별표에 규정된 죄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형법」 제114조에 따른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欺罔)하여 범행한 경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특정사기범죄”라 한다)로 한정한다]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특정사기범죄로 한정한다)

나.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 제356조 및 제359조의 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죄

6)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 ①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고,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한다. <2026. 6.17. 시행>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에 관하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을 준용한다. <2026. 6.17. 시행>

④ 이 법에 따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한다. ⑤ (생략)

7)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환수 등에 관하여 형법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범죄의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려는 것임.

8)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UNCAC,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은 다양한 부패형태를 범죄화하고, 부패사범에 대한 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 및 정보교환 등 국제공조제도를 구축하며,

의 반사회성 정도, 국제협력의 필요성¹⁰⁾, 국가가 직접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방식의 도입 필요성¹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정안은 첫째, 한창민의원안 제2조제3호가목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¹²⁾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한 경우’는 범죄의 조직성, 피해 규모, 피해 회복 가능성 등의 요소를 개별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경우 그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박정훈·박은정·이인영의원안에서는 부패범죄만 추가하고 있

부패수익 자산을 몰수하여 본국에 반환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협약 당사국총회를 통해 각국의 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제도와 기구를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9) 협약에서는 어떤 범죄를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전제범죄(Predicate offence)’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각 당사국이 최대범위의 전제범죄에 대해서 범죄수익 은닉·가장 등에 대처할 것과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를 포괄적으로 전제범죄로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음.

(※ 참고자료4 협약 제23조 참조)

10)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의 특례 조항을 신설한 이유는, 부패범죄 중에서도 횡령죄나 배임죄와 같이 피해자가 있는 부패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외국에서 국내로 환수받거나 국내에서 외국으로 반환하기 위해서는 그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 경우 범죄피해재산이라도 몰수할 필요성이 있고, 나아가 범죄피해자가 재산권을 행사하여 피해재산을 회복하기 심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대신하여 피해재산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재산권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최선의 피해자 보호책이라는 관점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이진국,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를 위한 입법적 과제”, 「일감법학 제23호」, 2012, p.93-94).

11) 현행법이 부패범죄 중에서도 제한된 범죄행위만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는 것은 민사·형사를 구분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사의 영역이고, 이를 확대하는 것은 민사사건의 형사화, 현행 몰수법체계와의 충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는데, 피해자 환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를 범죄피해재산의 대상범죄에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법무부**는 불법대부업의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 대부업법 위반을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부패범죄와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각각 규정할 필요가 있고, 대부업법 제9조제2항제2호 외에는 범죄수익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으로 볼 수 없어 피해자 환부 대상은 제19조제2항제2호로 한정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원행정처**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나, 전세사기의 경우는 포괄적이어서 입법취지에 맞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범죄유형을 추가할 경우 부패범죄 및 범죄피해재산의 대상범죄에 모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서울지방법변호사회**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나, 민·형사 사법체계의 정합성 저해 우려, ‘민사사건의 형사화’, 남용 가능성, 재판 지연에 따른 피해구제 역효과 등을 고려하여,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여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참고자료 1] 대부업법 제19조 및 관련 조문

대부업법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2제5항 각 호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대부업 등록증을 양도·양수·대여·유통한 자
2.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
3.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 행위를 한 자
4. 제9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과정 또는 대부중개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한 자
5. 제9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2.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4.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다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

5.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자
 6.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
 7.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
 8.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자
 10.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제3조(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인은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2.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4.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5. 법인으로서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6. 전자적 장치·시스템 등을 통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하 “대부중

개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조의2(등록갱신) ① 대부업자등이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등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의2(상호 등) ④ 이 법에 따른 대부업자등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부업자등이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는 행위
2. 대부업자등의 등록증을 양도·양수·대여·유통하는 행위

제7조(과잉 대부의 금지) ③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제9조의2(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3(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등) ② 대부업자등(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부기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2. 서민 등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제9조의4(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등) ① 대부업자는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업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9(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① 대부업자는 대부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대부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대부중개를 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대부업 이용자의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할 때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라 한다)가 그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대부, 지급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대부업자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신용공여”라 한다)의 합계액은 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넘을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대부업자로부터 그 한도를 넘겨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⑦ 여신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대부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①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제8조제2항에 따라 이자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상법」 제54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① 대부중개업자는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거나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중개시스템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이하 “대부중개업자등”이라 한다)과 불법사금융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대부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중개수수료 상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대부중개업자등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이자 및 연체이자를 받는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참고자료 2] 채권추심법 제15조 및 관련 조문

채권추심법 제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
4. 제11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2호를 위반하여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4(소송행위의 금지)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라목에 규정된 자로서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제10조(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참고자료 3]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별표]

부패범죄(제2조제1호 관련)

1. 「형법」 중 다음 각 목의 죄
 - 가. 제2편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 나. 제2편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중 제315조의 죄
 - 다.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특정사기범죄로 한정한다)
 - 라.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
2. 「형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한 공무원 의제에 따른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다음 각 목의 죄
 - 가. 제3조 중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특정사기범죄로 한정한다)
 - 나. 제3조 중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죄
 - 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5.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의 죄
6. 「국민투표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죄
7. 「공직선거법」 제230조부터 제233조까지 및 제235조의 죄
8.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죄
10. 「변호사법」 제33조 및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의 죄
11.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93조 및 제94조의 죄
12. 「상법」 제630조, 제631조 및 제634조의2의 죄
1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죄
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5조, 제646조, 제655조 및 제656조의 죄
15. 「경륜·경정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죄
16. 「한국마사회법」 제5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및 제124조제1항제9호의 죄
18.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제95조 및 제95조의2의 죄
19. 「고등교육법」 제64조제2항제2호의 죄
20. 「공인회계사법」 제22조제3항 및 제53조제1항의 죄
21.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1호 및 제48조제1호·제2호의 죄
22. 「근로기준법」 제9조 및 제107조의 죄
23.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제1항 및 제70조제2항제2호의 죄
24. 「보험업법」 제201조 및 제203조의 죄
25.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59조 및 제60조의 죄
26. 「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의2 및 제99조제2항제3호의 죄
27.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8조 및 제59조의 죄
28. 삭제 <2016.12.20>
29.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7조의 죄

[참고자료 4]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제23조

제23조(범죄의 수익의 세탁)

1. 각 당사국은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고의로 범한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한다.
 - 가. (1) 해당 재산이 범죄의 수익임을 알면서, 그 재산의 위법한 취득원을 은닉 또는 가장할 목적으로 또는 전제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자가 그 행위의 법적 결과로부터 회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그 재산을 전환 또는 이전하는 행위
 - (2) 해당 재산이 범죄의 수익임을 알면서, 그 재산의 실제 성질·출처·소재·처분·이동 또는 소유권이나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은닉 또는 가장하는 행위
- 나. 자국 법체계의 기본 개념에 따라,
 - (1) 해당 재산을 수령하는 때에 그것이 범죄의 수익임을 알면서, 그 재산을 취득·점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 (2) 이 조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실행에 참가·공모·음모·미수·방조·교사·조장·조언하는 행위
2. 이 조 제1항의 이행 또는 적용상,
 - 가. 각 당사국은 이 조 제1항을 최대범위의 전제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 나. 각 당사국은 적어도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를 포괄적으로 전제범죄로서 포함시킨다.
 - 다. 나호의 목적상, 전제범죄는 해당 당사국의 관할권 내외에서 실행한 범죄를 모두 포함한다. 다만, 당사국의 관할권 밖에서 실행한 범죄는 관련 행위가 실행된 국가의 국내법에 의하여 범죄가 되고 그러한 행위가 이 조를 이행 또는 적용하는 당사국에서 실행되었더라도 그 국내법에 의하여 범죄가 되는 때에만 전제범죄를 구성한다.
 - 라. 각 당사국은 이 조를 시행하는 자국의 법률 및 그러한 법률의 추후 변경된 내용의 사본 또는 그 설명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 마. 자국의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 당사국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가 전제범죄를 실행한 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함을 규정할 수 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502100100&bid=23&tag=&act=view&list_no=11212&nPage=)

문 의 처

02)6788-5051
